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발효 2024년 7월 1일

수정 2026년 7월 1일

목차

1	목적	1
2	정의	1
3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개요.....	1
	3.1 지역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2
	3.2 인구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4
	3.3 카운티 전체 협력 활동	5
4	기본 원칙	6
	4.4 이해관계자 집단의 목표.....	6
	4.5 이해관계자 집단 공동 의장 집행 위원회.....	7
5	이해관계자 회의 구조 및 요건.....	7
	5.1 일반 요건	7
	5.2 이해관계자 집단 회원(구성 및 요건)	8
	5.3 투표 권한	10
	5.4 공동 의장 자격 요건	11
	5.5 공동 의장 책무	11
	5.6 공동 의장 참석 요건	12
	5.7 리더십 위원회 회의	13
	5.8 공동 의장 임기	13
6	LACDMH 연락 담당자 책무	13
	6.1 회원 모집	14
	6.2 회의 진행 및 행동 강령 지원	14
	6.3 참석.....	14
	6.4 회의록	15
	6.5 운영 실무	15
	6.6 보고서 및 데이터.....	16
	6.7 CAF 활동비 청구 승인	17
	6.8 연간 예산	17
	6.9 UsCC 및 FBAC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17
7	채택	18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붙임

붙임 I: 이해관계자 회의 양식

붙임 II: 이해관계자 회의 행동 강령

붙임 III: 공동 의장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및 직무 개요

붙임 IV: 이용자 활동 기금 참여자 가입 규정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1 목적

본 문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LACDMH/당국)에서 행동 건강 서비스법(Behavioral Health Services Act, BHSA)의 계획과 활동,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규율하기 위한 내규, 정책, 절차(Bylaws, Policies, and Procedures)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1. ADA: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 ARISE: 반인종차별, 포용, 연대 및 역량 강화 부서(Anti-Racism, Inclusion, Solidarity and Empowerment Division)
3. BHC: 행동 건강 위원회(Behavioral Health Commission)
4. BHSA CPT: 지역 사회 계획팀(Community Planning Team)을 가리키며, 이는 주가 의무화한 카운티 전역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서 행동 건강 부서와 협력하여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서비스를 형성함
5. BH 돌봄 연속체: LACDMH 및 DPH SAPC가 제공하는 통합 돌봄 체계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반을 가리키며, BHSA 기금과 비 BHSA 기금을 모두 포함함
6. CAF: 이용자 활동 기금(Client Activity Fund)
7. 카운티 CEO: 최고행정관실(Chief Executive Office)
8. DO: LACDMH에서 운영하는 직영(Directly Operated) 클리닉
9. DPH: 공중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10. LACDMH 행정부: BHSA 행정부 및 ARISE 부서
11. LACDMH ASB: LACDMH 행정서비스국(Administrative Service Bureau)
12. LAC ISD: LAC 내부서비스국(Internal Services Department)
13. SAPC: 물질 남용 예방 및 통제국(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bureau)
14. 서비스 구역: LACDMH의 관할 구역을 여덟 개의 개별 지리적 서비스 구역(Service Area, SA)으로 나누는 방식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3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개요

본 내규, 정책, 절차, 행동 강령은 BHSA 계획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 적용되며, 다음 집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지역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 서비스 구역 리더십팀(SALT, Service Area Leadership Teams)
- 건강한 마을(HN, Health Neighborhoods)
- 서비스 구역 종교 간 협력체(Interfaith Collaboratives) 및 행사/활동
- 동료 자원 센터(PRC, Peer Resource Centers) 및 클럽하우스

➤ 인구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 소외 문화 공동체(UsCC, Underserved Cultural Communities)
- 동료 지지 협의회(PAC, Peer Advocacy Council)
- 청소년 자문 위원회(YAC, Youth Advisory Council)
- 어르신(OA, Older Adults) 자문 위원회
- 노숙 경험인(PEH, People Experiencing Homelessness) 자문 위원회

➤ 카운티 전체 이해관계자 협력 활동

- 신앙 기반 지지 위원회(FBAC, Faith-Based Advocacy Council)
- 문화 역량 위원회(CCC, Cultural Competency Committee)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

본 내규, 정책, 절차는 각 집단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준의 행동 건강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돌봄 연속체 전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화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LACDMH 행정부는 BHSA 정책 및 규정에 기반하여 2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본 내규, 정책, 절차를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HSA 행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3.1 지역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3.1.1 서비스 구역 리더십팀

SALT 회의는 8곳의 서비스 구역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우선순위를 놓고 협력하며, LACDMH 프로그램과 행사에 대한 핵심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고, 돌봄 접근성과 서비스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SALT 회의는 다음과 관련된 정보 및 권장 사항을 당국에 제공합니다.

3.1.1.1 LACDMH 프로그램, 서비스, 체계에서 나타나는 공백.

3.1.1.2 해당 SA에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

3.1.1.3 정신 건강 웰빙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내 자원.

3.1.1.4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낙인을 줄이고,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역량을 키우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활동 및 행사.

3.1.2 건강한 마을

HN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제공자를 하나로 모아 협력 관계를 맺고 강화하며 각 지역에서 통합된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지역 기반 협력 단체입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반 시설의 수요에 따라 다르며 특정 지역에는 여러 HN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기관 및 지역 사회 기반 단체도 HN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및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지원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 및 시 기관, 교육기관, 주거 서비스, 신앙 기반 단체, 직업 지원, 옹호 및 비영리 단체, 예방 프로그램,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1.3 서비스 구역 종교 간 협력체 및 행사/활동

서비스 구역 종교 간 협력체는 특정 SA 안에서 신앙 기반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에 속한 개인들을 하나로 모아 도움과 교육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지원 및 영성을 아우르는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종교 간 협력체는 매달 회의를 하며, 종교 기반 파트너 관련 자원을 공유하고 종교 간 조찬 모임(Interfaith Breakfasts), 교육 강좌, 심포지엄 같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SA 종교 간 협력체는 카운티 전역에서 신앙 기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카운티 CEO 신앙실(Office of Faith)과 카운티 전역 신앙 지도자 연합체(Faith Alliance), 아동 가족 서비스부(DCFS), 보건국(DPH) 신앙실의 이니셔티브, 소방국 및 보안관국의 신앙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카운티 부서와 함께하는 신앙 관련 활동과 협력합니다.

3.1.4 동료 자원 센터 및 클럽하우스

동료 자원 센터(PRC)는 이용자가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일상적인 지원을 받고,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 방문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LACDMH 클럽하우스는 이용자가 생활 기술을 개발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은 총체적인 웰빙을 돕는 클럽하우스 프로그램에 매일 세 시간씩 참여해야 합니다.

3.2 인구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3.2.1 소외 문화 공동체

UsCC는 그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를 받아 온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대표하며, 이들 공동체에 속한 LACDMH 이해관계자를 대변합니다. UsCC는 카운티 전역을 아우르고, 지역 사회가 주도하며, 문화적/민족적 특성에 따라 구성됩니다. 각각 독립되고 구별되는 7개의 UsCC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두를 위한 접근(Access for All)
-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AI/AN)
- 아시아계/태평양 제도민(API)
- 흑인 및 아프리카계(BAH)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라틴계(Latino)
- LGBTQIA2-S+
- 중동계/동유럽계(ME/EE)

UsCC 회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키우고 하나로 모으며, 문화적 반응성을 강화하고, 행동 건강 서비스 체계 안에서 형평성을 촉진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당국 직원에게 안전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UsCC 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과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 기금 출처에 상관없이 BH 돌봄 연속체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 특정 문화 집단을 위해 마련된 지역 사회 정의 실천
- 소외된 민족 공동체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주 전역의 행동 건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들 공동체가 돌봄과 양질의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고 개선하는 일
- 특정 문화에 맞춘 역량 강화 프로젝트
- 낙인을 줄이고, 인식을 높이며,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주도 프로젝트

3.2.2 동료 지지 협의회

PAC는 직접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에 관한 의견과 피드백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둔 이해관계자 집단입니다. 동료로부터 받은 의견과 피드백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료/이용자에게 특별히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는 LACDMH 프로그램, 서비스 및 인력 이니셔티브의 설계, 개발, 이행, 상시 운영에 대해 동료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LACDMH와 그 국장/집행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2.3 청소년 자문 위원회

YAC는 카운티 전역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회원은 13세에서 26세 사이의 청소년이며,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카운티 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전합니다.

3.2.4 기타 임시 인구 중심 이해관계자 집단

- **어르신(OA) 자문 위원회**- 60세 이상의 동료/이용자가 내는 의견 및 피드백에 집중하는 임시 집단이 포함됩니다.
- **노숙 경험인(PEH) 자문 위원회** - 현재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동료/이용자의 의견 및 피드백에 집중하는 임시 집단이 포함됩니다.

3.3 카운티 전역 협력 활동

3.3.1 신앙 기반 지지 위원회

FBAC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MHSA)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MHSA가 BHSA로 전환되는 가운데, FBAC는 신앙 기반의 신념과 노력, 활동을 BH 돌봄 연속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접목함으로써 낙인을 줄이고자 하며, 이를 위한 노력과 활동에서 다른 신앙 기반 단체들과 협력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FBAC와 그 파트너들은 전통적, 비전통적 행동 건강 서비스를 아우르고, 신앙 활동을 통합하여 희망, 웰빙, 회복을 촉진합니다. FBAC는 LACDMH, 서비스 구역 종교 간 협력체, CEO 신앙실, 신앙 지도자 연합체, 기타 카운티 당국의 신앙 기반 활동과 협력하면서 공공 행동 건강 체계의 역량을 키우고, 정신 건강 치료와 종교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전인적 건강을 달성하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3.2 문화 역량 위원회

CCC는 행동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문화적으로 부합하는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는 자문 단체입니다. 또한 소외된 집단의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CCC 회원은 이용자, 가족 구성원, 옹호자, DO 제공자, 계약을 맺은 제공자, 지역 사회 기반 단체를 아우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 반영됩니다.

3.3.3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

LACDMH BHSA 계획 기금을 지원받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집단에도 본 내규, 정책, 절차에서 정한 조건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기본 원칙

본 내규, 정책, 절차를 따르는 이해관계자 집단은 LAC의 다양한 주민과 이들이 대표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고루 반영되도록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넓히고 활성화하는 데 힘씁니다.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회의 공간에서는 이용자, 가족 구성원, 문화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를 환영합니다. 이해관계자는 LACDMH 프로그램 및 행사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우려 사항을 나누며, 다양한 제안과 통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집단은 다음 사항에서 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우선순위와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1 지역 사회의 요구에 대한 평가 방법 마련

4.2 데이터 기반 전략을 통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그 성과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4.3 프로그램 및 행사의 개선, 평가, 예산 책정에 해당하는 권장 사항 제공

4.4 이해관계자 집단의 목표

이해관계자 집단은 당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다양한 지역, 문화, 민족의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포함하며 해당 지역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LACDMH 행정부와 협력합니다. 이해관계자 집단은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 가치, 원칙, 기대에 기반한 활동을 수립합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4.1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를 공개하여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해관계자는 회의 10영업일 전에 요청된 ADA 상의 접근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4.2 참여자의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요구를 충족합니다.

4.4.3 이용자, 가족 구성원, 문화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 카운티 당국, 특수 이해 집단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끕니다.

4.4.4 지역 및/또는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교육, 의뢰, 연계, 낙인 감소를 돕는 정신 건강 홍보 행사(SALT의 경우) 또는 역량 강화 프로젝트(UsCCs 및 FBAC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합니다.

4.4.5 이용자, 가족 구성원, 문화 중개자, 서비스 제공자, 특수 이해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을 위해 일관성 있는 지역 사회 주도 플랫폼을 만듭니다.

4.4.6 그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서비스를 받아 온 집단을 끌어들이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대표성을 넓히며, 이해관계자가 대표성과 회원 수를 늘릴 참여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4.4.7 이해관계자 집단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다양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합니다.

4.5 이해관계자 집단 공동 의장 집행 위원회

본 내규, 정책, 절차에 따르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은 집단 내 리더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기에는 각 집단이 선출한 공동 의장 또는 임명한 집행 위원회가 포함됩니다. 해당 선출/임명된 집단 지도자는 각 집단의 회원, DMH 연락 담당자/DMH 프로그램 관리자와 협력하여 회의 내용 및 진행, 예산 책정/집단의 목표 관리 및 계획, 지역 사회 계획 수립, 집단 내 역량을 강화하는 참여 활동 및 프로젝트 개발 작업을 함께 합니다.

5 이해관계자 회의 구조 및 요건

5.1 일반 요건

이해관계자 회의는 브라운 법(Brown Act)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의가 개방적이면서도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아래의 회의 구조와 일반 요건을 따릅니다. 지리적·문화적 관점 및 카운티 전역 협력 집단의 관점을 대표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은 적어도 매월 한 번 소집됩니다. BHSA CPT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참여자를 위해 다양한 월간 주제별 작업 그룹과 포럼을 마련합니다.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안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다루어집니다. 모든 회의는 녹화되며 모든 회의록, 자료, 녹화본은 다음 회의 1주일 전까지 제공, 게시, 배포됩니다. LACDMH는 ADA에 따라 회의 10영업일 전까지 편의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DMH 연락 담당자는 모든 편의 서비스 요청을 [ARISE 부서\(ARISELAS@dmh.lacounty.gov\)](mailto:ARISELAS@dmh.lacounty.gov)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요청, 프로토콜, 지시가 있는 경우 연락하세요. 편의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 미국 수어(American Sign Language, ASL) 서비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실시간 문자 통역(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CART) 서비스
- 큰 글자 인쇄물
- ADA에 따른 그 밖의 편의

회의 안건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현재 활동에 기반합니다. 포함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프레젠테이션(공식 또는 비공식)
- LACDMH 연락 담당자와 LACDMH 행정부의 소식 공유
- 역량 강화 프로젝트 및 집단별 우선순위에 관한 공개 논의 진행(규모가 더 큰 BHSA CPT 회의에서 다룰 프레젠테이션 및 논의 주제를 정하기 위함)
- 행동 건강 체계를 위한 우선순위와 권장 사항 옹호

회의 안건은 정규 회의 전에 집단에서 선출한 공동 의장, LACDMH 연락 담당자 및/또는 LACDMH 행정부가 함께 정합니다. 모든 공식 및 비공식 프레젠테이션, 초청 연사, 교육, 워크숍은 집단이 속한 LACDMH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은 연락 담당자가 조율합니다. 공동 의장은 LACDMH의 사전 승인 없이 연사의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자 회의의 참석 현황은 연락 담당자가 대면 또는 전자 참석 명부를 통해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SALT 및 UsCC 참석 현황 보고서는 분기별로 9월 30일, 12월 30일, 3월 30일, 6월 30일에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SALT - communitystakeholder@dmh.lacounty.gov UsCC - UsCC@dmh.lacounty.gov

5.2 이해관계자 집단 회원(구성 및 요건) 회원 자격은 12세 이상의 적격 참여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집단의 일반 투표 회원으로 지원하려는 예비 회원은 해당 이해관계자 집단과 본인의 관심 분야를 밝혀야 합니다. 투표 회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 배경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자 및/또는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 지역 사회 구성원, 특히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고립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서비스 이용자의 동료, 가족 구성원, 보호자
- 문화 중개자(지역 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
- BHSA CPT, SALT, UsCC의 회원
- 청소년(12~17세)
- 전환기 청소년(16~25세)
- 개인 및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
- 사법 제도를 거친 경험이 있는 사람
- 법 집행 기관/보호 관찰
- 비관리직 정신 건강, 사회 복지, 물질 사용 서비스 제공자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여러 도시를 대표하는 개인
- 지역 노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개인
- 다양한 유형의 주거, 지원, 제공자를 대표하는 개인
-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 지지 단체
- 청각 장애인과 난청 공동체 구성원, 저시력자를 비롯해 여러 신체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 발달 장애 단체
- 교육 단체/학술 기관
- 문화, 영성, 의식 단체를 포함한 신앙 기반 단체
- 유색인종 공동체와 이민자, 인종·건강 형평성, 문화적 포용, 장애인 권리, LGBTQI2-S+, 연령별 옹호 집단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풀뿌리 단체
- LACDMH를 제외한 정부 기관 및 기타 카운티 부서
- 비BHSA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행동 건강, 건강 형평성, 이민자, 노숙인 지지 단체
- Medi-Cal 관리형 진료 계획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계획을 대변하는 개인
- 주민 자치회(Neighborhood Council) 대표
- 부족 및 원주민 건강 프로그램 대표

5.2.1 이해관계자 회의 중 발언

모든 참여자는 이해관계자 회의 중에 이야기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개인의 발언은 2분으로 제한되며, 이때가 되면 발언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넘겨야 합니다. 다시 발언하고 싶다면 대기열에 재차 들어가 2분의 발언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2분 발언 규칙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안건에 발표가 예정된 사람, ADA 편의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ADA 편의 서비스를 요청한 개인은 1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5.2.2 프레젠테이션

긴급 발의를 통해 회원들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회의에서 즉흥 프레젠테이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LACDMH 연락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그 외 프레젠테이션은 연사가 발표하고 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명시한 예정 안건에 발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2.3 투표가 필요한 문제/조치

회의 중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조치가 나오고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 공식 발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발의하는 회원은 이름과 발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발의는 회의록에 기록 및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재청 회원은 이름을 밝히고 재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회원들이 손을 들어 승인이나 거부, 기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대면 또는 가상으로). 투표수를 세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투표수와 발의한 투표자의 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5.3 투표 권한

투표 자격은 일반 회원 투표와 영구 회원 투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정 선거가 일반 회원 투표인지 영구 회원 투표인지는 LACDMH 연락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투표자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소식을 꾸준히 파악하고 선거 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매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회원 투표는 주로 SALT 행사, 지역 사회 활동, 회의 프레젠테이션 같은 일회성 안건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회원 투표자는 투표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두 차례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세 번째 참석하는 회의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영구 회원 투표는 공동 의장 선출, 역량 강화 프로젝트, CPT 대표 및 투표처럼 집단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포함합니다. 영구 회원 투표권을 얻으려면 해당 회계연도 안에 자신이 속한 그룹의 회의에 연속되지 않게 여섯 차례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면, Teams를 통한 비대면, 전화 중 어느 방식으로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자 또는 대면 방식으로 회의 참석을 등록해야 합니다.

영구 회원 투표권을 유지하려면 회계연도 이내에 특별 교육과 행사를 제외한 월별 정규 회의에 여섯 번 참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구 회원 투표권을 상실합니다.

투표는 월별 정규 회의 중에 열리며,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거나 최소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안내된 결정 안건(예: 발의, 행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정 안건은 투표 회원의 51%가 동의해야 통과됩니다.

영구 투표와 일반 투표는 위의 참석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당 SA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두고 있거나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UsCC의 경우에는 위의 참석 요건을 충족하고 UsCC 집단의 회원인 사람에게만 투표가 허용됩니다.

SALT와 UsCC는 서로 별개의 단체입니다. 회원은 SALT 하나와 UsCC 하나에 대해서만 영구 투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여러 SALT와 UsCC에서 일반 투표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 투표 회원 자격은 개인이 직접 고른 SALT 하나와 UsCC 하나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회원의 일반 및 영구 투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회의 참석 현황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BHSA 행정부는 연락 담당자가 사용할 기록 양식을 제공합니다(붙임 1-부속서 IV). 모든 투표는 연락 담당자가 검증합니다. 투표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LACDMH에서만 사용됩니다.

5.4 공동 의장 자격 요건

공동 의장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5.4.1**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헌신이 입증되고, 다양한 단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을 것.
- 5.4.2** LACDMH를 비롯해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과 그 공동 의장, 지역 단체, 일반 대중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
- 5.4.3** 자신의 지역 사회에 LACDMH를 알리고 보고하며 안내하는 한편, LACDMH에도 자신의 지역 사회에 관한 정보를 전할 의향이 있을 것.
- 5.4.4** 이해관계자 회원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을 것.
- 5.4.5**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과 진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일 것.
- 5.4.6** 일관성과 신뢰성, 방향성을 갖추고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에 참석하려는 목표를 가질 것.
- 5.4.7** 전문적이고 품위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업무와 모든 소통을 수행할 것.
- 5.4.8** 갈등을 가라앉히고 논의를 승인된 안건으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5.4.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상시 거주하는 영구 거주자일 것.
- 5.4.10** 공동 의장의 행동이 행동 강령(붙임 II)에 어긋나지 않을 것.

5.5 공동 의장 책무 - 회의 진행 및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

공동 의장은 오직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며, LACDMH의 자문 역할을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공동 의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의장은 연락 담당자와 LACDMH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를 진행합니다. 월별 회의에 앞서 공동 의장에게 기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1** 배정된 LACDMH 연락 담당자 및 행정부와 만나 안건을 함께 계획할 것.
- 5.5.2** 지역 사회의 관심 사안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행정 기능, 목표, 세부 목표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
- 5.5.3** BHSA 행정부가 제공한 양식을 사용해 LACDMH에 데이터를 보고할 것(붙임 I).
- 5.5.4** LACDMH의 BHSA CPT 회의, 월별 BHC 회의, 기타 관련 플랫폼에서 오직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과 공식 입장만을 대표할 것.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5.5.5 UsCC 및 FBAC 역량 강화 프로젝트: 해당 집단의 공동 의장은 역량 강화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된 브레인스토밍 및 집단 논의를 진행하고 BHSA 기본 계약(BHSA Master Agreement)에 따른 작업 명세서(Statement of Work, SOW)의 내용을 작성하고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의장은 투표 회원이 요청한 SOW의 갱신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모으고, 그 내용을 연락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공동 의장은 이렇게 결정된 변경 사항을 연락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5.5.6 BHC 회의에 참석하고 LACDMH 연락 담당자와 협력하여 서면 보고서 및 구두 보고를 준비하는 데 협력합니다. 서면 보고서는 BHSA 행정부가 제공한 양식을 사용합니다(붙임 I). 서면 보고서 양식은 집단 회원과 논의하면서 작성해야 하며, 집단의 월별 소식과 활동을 담아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공동 의장이 BHC 총회(집행 위원회 회의는 제외)에 필요한 월별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보고서에는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 BHC가 보고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communitystakeholder@dmh.lacounty.gov로 제출합니다.

월별 BHC 총회(집행 위원회 회의는 제외) 후에는 구두 보고도 필요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집단과 논의해 정기 BHC 회의의 공개 발언 시간에 구두 보고를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보고는 서면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 담당자는 해당 인원이 주어진 3분 안에 발표할 일관성 있는 구두 보고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5.6 공동 의장 참석 요건

공동 의장은 계획된 불참이든 갑작스러운 불참이든 미리 LACDMH 연락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요구되는 공동 의장 활동에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공동 의장 직위가 정지되거나 의장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6.1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의 공동 의장은 다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연례 공동 의장 오리엔테이션(7월)
-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표해 의견을 내는 대면 BHSA 이해관계자 CPT 회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합동 아웃리치 및 참여 회의 전체(100%)
- SALT 또는 CCC, UsCC 활동의 서면 및 구두 보고를 발표하는 대면 월별 BHC 공개 회의

5.6.2 공동 의장은 다음을 주재해야 합니다.

- LACDMH 연락 담당자와 협력해 진행하는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안건 계획 전체(100%)
- 자신의 월별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 전체(100%)

5.7 리더십 위원회 회의

공동 의장은 LACDMH 연락 담당자와 협력하여 월별 리더십/계획 회의 일정을 잡고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의장은 월별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에서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안건과 행사,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5.8 공동 의장 임기

모든 공동 의장의 임기는 2회계연도입니다. 임기는 회계연도 첫날인 7월 1일에 시작해 두 번째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끝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는 5월이나 6월에 치르며, 신임 공동 의장은 다음 사항을 마쳤거나 예정해 둔 경우 7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합니다.

5.8.1 공동 의장 의무 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서(붙임 III) 완료

5.8.2 카운티 공급업체로 등록

5.8.3 회계연도 시작 시마다 공동 의장 지원서 제출

5.8.4 LACDMH 공동 의장 직무 기술서(붙임 III)에 서명 및 동의

6 LACDMH 연락 담당자 책무

LACDMH는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를 돕고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집단에 LACDMH 연락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공정하며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당국 및 이해관계자 양쪽과 기꺼이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연락 담당자는 LACDMH를 대표하며, 안건과 논의가 부서와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챙겨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의 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이해관계자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규를 적용하고 집행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 앞으로 공동 의장이 될 만한 인재를 발굴하고 멘토링합니다.
- BHSA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붙임 I)을 사용해 월별 BHC 회의용 서면 보고서 및 구두 보고 준비에 협력합니다.
- 매달 활동 보고서를 poeadmin@dmh.lacounty.gov로 제출합니다.
- 앞으로의 투표 활동에 대비해 회의 참석 현황을 기록하고 보고합니다(붙임 I).
- 이해관계자 집단 회원을 대상으로 CAF 교육을 진행합니다.
- CAF 및 공동 의장 온보딩 문서를 모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CAF 지원서의 정보(이름, 주소, 공급업체 번호)가 LAC 시스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CAF 인보이스를 월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6.1 회원 모집

연락 담당자는 BHSA 행정부를 대신하여 아웃리치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집단 회원의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고 회원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집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회원이 연령,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지역, 사회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배경을 아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2 회의 진행 및 행동 강령 지원

연락 담당자는 내규, 정책, 절차를 따르고 집단의 공식 결정이 BHSA 행정부에 전달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 진행을 돕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회의가 이해관계자, 공동 의장, LACDMH 직원에게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 의장을 위한 문화적 역량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율을 지원합니다.

MS Teams에서 열리는 이해관계자 회의에 관리자 접근 권한을 가진 LACDMH 행정부는 회의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습니다.

6.3 참석

연락 담당자는 집단 회원의 투표 자격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참석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참석 명부, MS Teams 회의 채팅, 전자 참석 명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연락 담당자는 회원의 임기 자격이 곧 만료될 때 이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연락 담당자는 공동 의장이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을 유지하고 월간 공동 의장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 의장의 참석 현황을 살핍니다. 또한 공동 의장이 활동비를 받든 받지 않든 회계연도 초에 공동 의장 계약을 제출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다음을 이행합니다.

- MS Teams로 회의가 녹화되고 녹취된다는 점을 참여자에게 알리며 모든 월별 회의를 시작합니다.
- 회의 예절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방해 행위가 있으면 회의가 종료된다는 점을 참여자에게 안내합니다.
- 일반 투표권과 영구 투표권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회원과 선출된 공동 의장의 참석을 기록합니다(붙임 I).
- 활동비 지원서와 CAF 인보이스 같은 제출 서류가 LACDMH 기록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 공동 의장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공급업체 번호)가 정확하며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 분기별 참석 보고서와 연간 공동 의장 지원서를 BHSA 행정부(CAFCoChair@dmh.lacounty.gov)에 제출합니다.
- 새로 선임되거나 해임된 공동 의장을 포함해 공동 의장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BHSA 행정부(cafcochair@dmh.lacounty.gov)에 알립니다.

6.4 회의록

연락 담당자는 BHSA 행정부가 제공한 회의록 양식을 사용합니다(붙임 I). 연락 담당자는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사람을 정합니다. 회의록을 기록할 때는 어떤 형식이든 인공 지능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연락 담당자는 지난 회의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회의 안건을 마련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과 지난 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배포 목록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관련 문서가 승인되면, 회의록은 당국 마이크로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게시됩니다.

6.5 운영 실무

연락 담당자는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에 필요한 모든 운영 실무를 조율하고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DA 기준에 맞는 편의 제공
-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안건 등 번역된 자료
- 기준 언어에 대한 통역 서비스
- 회의 장소 위치 선정 및 확보
- 회의 공지 및 알림 배포
- 회의록 작성 및 전달 사실 확인
- 회원들이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 녹화 및 녹취
- 비대면 회의용 자원 제공
- 강화된 MS Teams 안전 교육 참석
- 프레젠테이션, 교육, 워크숍, 초청 연사 일정 조율

LACDMH 행정부는 필요할 때 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 회의에 관리자 접근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6.6 보고서 및 데이터

보고서 및 데이터는 명확해야 하며 전문 용어/약어가 없어야 합니다.

6.6.1 BHC를 위한 월별 서면 및 구두 보고

서면 보고서는 BHSA 행정부가 제공한 양식을 사용합니다(붙임 1). 서면 보고서 양식은 집단 회원과 논의하면서 작성해야 하며, 집단의 월별 소식과 활동을 담아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공동 의장이 BHC 총회(집행 위원회 회의는 제외)에 필요한 월별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보고서에는 주요 활동을 중점으로 다루고, BHC가 보고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communitystakeholder@dmh.lacounty.gov로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BHC 총회(집행 위원회 회의는 제외) 후에는 구두 보고도 필요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집단과 논의해 정기 BHC 회의의 공개 발언 시간에 구두 보고를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보고는 서면본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 담당자는 해당 인원이 주어진 3분 안에 발표할 일관성 있는 구두 보고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6.6.2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연락 담당자는 BHSA가 제공한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에는 연령, 성별, 민족, 서비스 요구 사항, 민족적/문화적 집단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6.6.3 계획 데이터

연락 담당자는 주요 BHSA 계획 데이터 및 보고서를 이해관계자 집단에 공유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질문과 우려 사항을 BHSA 행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6.6.4 데이터 요청

연락 담당자는 BHSA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 참여 행정 조직(BHSA Stakeholder & Community Engagement Administrative Unit)에 당국의 데이터 및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소식과 변경 사항, 관련 정보를 BHSA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6.7 CAF 활동비 청구 승인

연락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CAF 활동비 청구를 검토하고 승인·처리하며 그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7.1 양식이 정확한지, 그리고 올바른 성명과 주소, 공급업체 번호로 갱신되어 있는지, 또 양식이 빠짐없이 작성되고 서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6.7.2 전자 서명으로 활동비 청구를 승인합니다.

6.7.3 작성이 완료된 CAF 청구 양식을 다음 이메일로 전자 제출합니다
(CAFChair@dmh.lacounty.gov).

연락 담당자는 CAF 활동비 청구 기록을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을 연속된 2회계연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의 활동비를 받으려면 그에 앞서 개인은 CAF 활동비 처리를 위해 매년 필수 CAF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해야 합니다(붙임 IV).

6.8 연간 예산

LACDMH는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계획 및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예산을 제공합니다. 역량 강화 활동에는 적절한 회의 공간 확보, 간단한 다과 제공,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교육·참여 활동 계획이 포함됩니다. LACDMH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BHSA 목표와 기획 지침에 맞는 행사와 프로젝트를 주최하거나 여기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영구 투표 회원은 연간 예산의 일부를 쓰는 제안에 대해 투표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각 집단의 예산 배정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확정됩니다.

6.9 UsCC 및 FBAC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 계획

UsCC 및 FBAC의 연락 담당자는 BHSA 기본 계약에 따라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공동 의장이 필요한 SOW를 작성하고 완성하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BHSA 기본 계약에 따른 요청 처리를 위해 완성된 작업 명세서를 BHSA 행정부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 담당자는 또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쟁점을 공동 의장에게 공유합니다. 연락 담당자는 기본 계약에 나온 요금표에 따라 계약이 준수되고 대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연락 담당자와 공동 의장은 계약 기관과 정규 회의를 열어 이행 일정과 과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성과 지표가 빠짐없이 파악·수집되어 BHSA 행정부에 보고되도록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관한 내규, 정책, 절차

7 채택

이로써 LACDMH의 관리하에 BHSA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과정에 적용되는 본 내규와 정책, 절차 및 여기에 포함된 모든 관련 불임을 채택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 배포합니다.

본 내규, 정책, 절차의 개정이나 갱신은 주 또는 지방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LACDMH는 2년 선거 주기에 맞춰 채택된 내규를 개정하고 갱신합니다. 내규 개정
에 관한 의견과 피드백, 권장 사항은 2년 주기 동안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 즉 짝수 연도에는 4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해야 합니다. 의견, 권장 사항, 피드백은
communitystakeholder@dmh.lacounty.gov로 제출해야 합니다.